

예술활동증명이란

왜 예술활동증명을 해야 하나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전에 먼저 마쳐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 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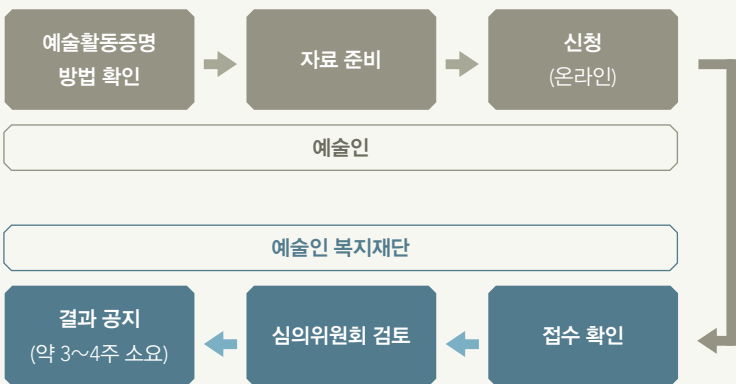
문학 / 미술 (미술일반, 디자인 · 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음악일반, 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

● 예술 활동 유형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활동증명,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을 해주세요. 각 방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미완료 처리가 될 수 있으나, 꼭 예술활동증명 방법과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

온라인 신청

경력 정보 시스템 www.kawartist.kr

회원가입) 본인인증) 예술활동증명 내용 입력 및 자료 첨부) 신청완료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확인 문자/전자우편 발송되며,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확인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시시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술인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 및 신청 지원해 드립니다.

전화 02-3668-0200 (평일 9:00~18:00)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결과 확인

소요 기간 3~4주

결과 확인 문자, 전자우편 공지

*‘완료’ 혹은 ‘미완료’로 결과 공지되며, 미완료 시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될 수 있으며, 심의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결과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 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시시오.

신청시 유의사항

- 학교(사설교육기관)내 예술활동, 학생이 대상인 예술활동은 직업 예술활동에 미포함 됩니다. (예. 졸업전시회, 과 정기공연 등)
- 경연대회(콩쿠르, 공모전), 봉사활동, 축제, 행사의 출연이나 기획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예술활동에 미포함 됩니다. 단, 경연의 성격이 있으나 일정 수준을 전제한 공연의 출연은 전문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출판분야, 강의/교육 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문화재청의 확인(재단이 확인)을 통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방법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예술 분야, 직업별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확인자료 (작품/공연명, 발표일시, 신청자명과 역할 확인 가능한 자료)

- 작품(비평)집, 문예지 표지/목차와 작품 수록면/발행 정보면
- 전시 도록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개인전 경우 갤러리 대관계약서 등 추가)
- 공연 포스터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출연계약서
- 음반 앨범 커버/발매 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영화 출연(참여)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통장 사본 등)
- 방송, 광고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와 소득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통장 사본 등), 관련 홈페이지 URL(*계약서 첨부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 계약당사자 정보 명시)



예술활동으로 얻은 최근 1년 동안의 수입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알려주세요.

확인자료

수입 내역 (지급처, 지급일시, 지급액)과 관련된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함께 준비

- 예술활동
리플릿, 도록, 도서 표지 등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입 내역 (아래 택 1)
 - 통장사본 (*소득 금액, 지급처, 지급 일시, 계좌 소유주 정보 포함, 지급처가 개인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필첨)
 - 은행 거래내역확인서
 - 계약서 (*계약기간 및 계약금, 계약당사자 정보 명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을 알려주세요

문	시인, 수필가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학	소설가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희곡작가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공통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세부 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된 독립된 서적
	문예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 · 계간 · 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월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로 봄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 순수 창작 저술 활동 (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추가 되고 교육 · 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여부, 교양 · 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최근 ‘3년’ 동안의 예술활동을 알려주세요

음	가창자, 연주자 (아래 택 1) - 3편 이상의 음악 · 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 ·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판
악	작사(곡), 편곡가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 · 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국	비평가 3편 이상의 음악 · 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 · 국악 비평집 출간
악	지휘자 음악 ·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음악 · 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세부 기준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명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유희열쇼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

무	무용수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용	안무가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비평가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
세부 기준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명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연	배우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극	*장기공연 출연 배우 경우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활동 실적으로 인정
	연출가 1회 이상 연극 공연 연출
	국작가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비평가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연극 공연 참여
세부 기준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명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지금까지 활동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치시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예, 경력단절, 원로 예술인 등),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합니다.

확인자료

그동안의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자료 및 포트폴리오, 이수 교육, 수상 자료 등

참고사항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산재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서면 계약서’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해야함
- 갱신
직업 예술인으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갱신일(유효기간)이 설정되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 복지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예 소설가로 2015년 1월 예술활동증명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마친 경우 2020년 1월이 갱신일로 지정

미술	작가 5회 이상 미술 · 사진 · 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작품을 관련 매체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응용 미술 포함	비평가 5회 이상 미술 · 사진 · 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 출간
· 사진 · 건축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 (예술감독 경우 1회) 이상의 미술 · 사진 · 건축 전시회에 참여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 건축	세부 기준 *건축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함
만	만화가 (아래 택 1) -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화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료 첨부) -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비평가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단, 만화 작품 제작 기술지원 스태프 경우 2년 이상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만 한함)
	세부 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된 독립된 서적

영	배우 3편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 출연
화	감독 최근 5년 동안 (단편영화 경우 3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상영된 영화 1회 이상 연출
	시나리오작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해 발표
	비평가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5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참여
세부 기준	1편 개별 독립된 작품을 지칭

연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등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 · 코미디 · 예능 · 교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
예	*장편드라마 출연 배우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3년 동안 3편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패션모델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공연자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작가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 · 예능 ·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혹은 연예 공연에 참여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는 5년 동안의 활동)
세부 기준	1편 개별 독립된 작품을 지칭 *패션쇼와 광고 분야 경우 모델 활동만 인정